

□ 제안이유

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체육활동 여건제공으로 우수한 체육 지도자 및 선수를 육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직장체육진흥 활성화와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직장의 명예와 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, 감독, 지도자, 선수로 조직 운영하며 단장은 시장, 감독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함.
(안제3조)
-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은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함.
(안제4조 및 제5조)
-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, 수당, 훈련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,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함.
(안제8조)

□ 검토의견

법령 적합성 검토

-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적합한 것으로 생각됨

내용적 타당성 검토

-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관련 문제점
 -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연간 약 1억5천만이 예상됨.
 - 현재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관계로 많은 수의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야 하고 현재 재정자립도도 약 50%에 불과한 시점에서 직장운동 경기부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됨.
 - 또한 창단종목 선정의 경우도 좀더 공개적이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
-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시 효과
 -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는 도의 확고한 방침으로 창단비 및 운영비로 최고 8천만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운동경기부 재원확보는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.
 - 직장운동경기부 설립시 도민체전에서 가점제 실시하고
 - 또한, 도의 추진 방침이 직장운동경기부창단 시·군에 대형사업 및 시·군 시책사업에 도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낮고 도비지원도 중요한 재정 자원의 하나인 우리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이 필요할 것으로도 생각됨.

- 이와 같이 직장운동경기부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이 요구됨
- 한편, 동 조례안의 조문체계와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.
-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법적용상 엄연한 수직관계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가능하더라도 조례에서는 그 규율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.
- 이런 관점에서 동 조례안을 검토해보면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음.